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289

발의연월일: 2021. 8. 27.

발 의 자: 송언석・권명호・金炳旭

김영식 · 김정재 · 박덕흠

양금희 · 임이자 · 정희용

최형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법인세법」 및 「소득세법」에 따르면 접대비는 접대, 교제, 사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임.

그런데 접대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부정적인 비용을 연상시키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'접대비'를 '기업활동촉진비'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제1항제6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송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2285호), 「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 12288호),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28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 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9조제1항제6호 중 "접대비"를 "기업활동촉진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(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	제39조(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
세액)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	세액) ①
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	
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	6. <u>기업활동촉진비</u>
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	
액	
7. • 8. (생 략)	7.・8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